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서천서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6. 01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3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공동대출 모집 및 취급업무 부적정 등

- 기업시설일반자금 취급시 대출모집 관련 절차 및 수수료 비용 취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, 공동대출 관련 심사 업무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, 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, 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68조(대출관련 수수료), 제357조(모집대상 대출상품), 제381조(공동대출 취급 가능 기관), 제393조(수수료 수취), 제394조(이자 선취 금지), 제397조(사후관리), 제401조(구성원), 제404조(계약내용의 변경 등)
- 「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」 제1장 제3조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(징계양정기준) <별표>징계양정기준표